

(붙임1)

「한국은행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 개정

I 개정 필요성

- 정부 및 울산광역시의 정책에 대응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입기업 및 소재부품생산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신규 지원할 필요
- 전략지원부문의 자금지원 효과 제고 및 울산지역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조정할 필요

II 주요 개정 내용

- 전략지원부문 지원확대 및 지원범위 조정
 - (전입기업) 울산경제자유구역(2020.6.3)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(2019.11월~2020.11월) 등에 따라 타지역 및 해외에서 복귀하는 중소기업의 울산 지역 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전략지원부문으로 지원을 강화
 - (소재부품생산기업) 지역 내 소재부품생산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
 -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「전문기업*」 이외에 「특화선도기업**」 및 「강소기업***」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이에 대한 시설자금을 지원
- * 소재·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·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
**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적 역량과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 또는 성장 유망기업
***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의 매출액비중, 연구인력수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업
- (벤처기업) 전략지원부문의 지원효과 제고 및 지역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벤처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

□ 「인재육성형 중소기업」을 신규지원

- 울산지역 중소기업의 인적자원 확보 지원 및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 지원을 위해 「인재육성형 중소기업*」을 신규지원

*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에 의거 우수인력을 채용하고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해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

□ 기타 개정사항

- 울산지역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강화
 - 이차보전대출을 지원대상에 포함
 - 특별지원부문의 지원대상 업체 소재지를 울산지역으로 한정하여 지역 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 여력을 확대
- 지원대상에 대한 근거법 및 제출서류를 운용기준에 명시하고 여타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과 지원대상이 중복되는 수출관련기업, 기술혁신형기업 등을 지원대상에서 제외

Ⅲ 시행일

□ 2021.2.1일(금융기관 대출취급일 기준)

- 시행일 이전 금융기관 대출취급분의 경우 종전 기준을 적용